



# 중개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!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일제정비 계획

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 정비함으로서 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.

## I 관련 근거

- 「공인중개사법」 제10조, 제38조, 제39조
-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## II 추진 개요

- 정비기간 : 2015.07.01. ~ 12.31.
- 정비대상 : 관내 개업공인중개사, 소속공인중개사, 중개보조원
- 정비인원 :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975명
- 정비방법 : 등록기준지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조치
- 정비협조 :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협조
-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 (단위 : 업소수)

계	공인중개사	중개인	법 인
690	661	28	1

-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록 현황 (단위 : 명)

계	소속공인중개사	중개보조원	비 고
285	38	247	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임

### Ⅲ

## 세부추진계획

- 준비기간 : 2015.07.01. ~ 12.31.
- 추진계획
  - 2015.07.01. ~ 07.31. : 대상자 발체 및 조서작성
  - 2015.08.01. ~ 09.30. : 등록기준지 조회
  - 2015.10.01. ~ 10.31. : 시,군,구 신원조회 의뢰
  - 2015.11.01. ~ 12.31. : 결격사유 대상자 조치 및 결과보고
- 추가정비 병행
  - 사망자 색출하여 등록취소 조치.
  - 중개보조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소속공인중개사로 변경등록 토록 1차 권고, 2차 조치.
  -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사자 신고하도록 1차 권고, 2차 조치.

### Ⅳ

## 기대효과

- 결격사유 대상자 색출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.
- 결격자 색출로 중개사고 사전예방.
- 주민의 재산권 보호.

### Ⅳ

## 행정사항

-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조회 협조.
- 소요예산 : 비 예산.